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646호)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9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6호)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1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7
1.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 마련 등(소병훈의원안)	7
2. 인구 30만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 운영(송옥주의원안)	20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에 군인·경찰공무원 등 명시 (김성원의원안)	24
4.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공산후조리원 직접 설치·운영 등 (이정현의원안)	28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64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6. 19.
- (3) 회 부 일 : 2024. 6.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1
7제2항, 제23조의2,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5조의20).

2.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

(3) 회 부 일 : 2024.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제2항 신설).

3.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4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
- (3) 회 부 일 : 2024.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전방·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 증진과 출산 지원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4.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9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현의원 등 25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5년 전인 0.91명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저출생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설치·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수는 총 20곳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수 436곳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그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17 등).

Ⅱ. 검토의견

1.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 마련 등(소병훈의원안)

- 소병훈의원안은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및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며(안 제15조의20제1항 및 제3항),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현 행	소병훈의원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생략) <u><신설></u>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u>평가할 수 있다.</u>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 ----- ----- ----- ----- <u>매년 평가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표할 수 있다.</u>	③ ----- ----- ----- <u>공표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의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 관한 정보
2.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정보
3. 제10조의4에 따른 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보
4. 제10조의5에 따른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정보
5.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관한 정보
6.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7. 제11조의4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에 관한 정보

8.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

9.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에 관한 정보

10.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평가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과 단체는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① -----

-----.

1. ~ 3. (생략)

<신 설> 4. (생 략) ② · ③ (생 략)	4. 제2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통합 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누설한 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서,¹⁾ 199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운영·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6년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한편,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 12월 개정²⁾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하였음.

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3년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소³⁾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76개소 중 4.2%에 해당함.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평균 이용요금 (2주, 일반실)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76	20	456	57.7	58.9	177	335	7.5	12.2

자료: 보건복지부('23.12월 기준, 휴업제외)

첫째,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신설을 살펴보면,

-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⁴⁾은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제2항에서는 공공산후
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재
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보임.

3) p.33, 참고자료1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참조

4)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
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
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
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현재 20개소인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가의 지원과 함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의 재정부담⁵⁾을 수반하게 되므로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이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사실상 산후조리원 비용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지원은 중복조치가 있다는 의견임.

둘째, 산후조리원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의무화와 관련하여,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9조의4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3년마다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⁶⁾하고 있음.

5)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 설치될 공공산후조리원의 수, 설치 규모 및 국가의 지원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6)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개정안과 같이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후조리원 평가의 주기(3년)를 법률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경우, 체계적 평가를 통해 산후조리원 인력의 전문성, 시설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산후조리원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산후조리원 평가는 2016년 「모자보건법」 시행으로 도입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2017~2018년에는 동 평가지표의 현장 수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음. 2018년 제2차 시범사업 결과,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본평가에 앞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평가에 대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2019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개요 >

- (목적)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 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현장의 평가수용도 향상 및 공정한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을 위한 토대 구축
- (사업내용)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종사자의 전문성, 감염예방관리,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 컨설팅 제공
- (사업기간) '19년 ~ 계속 사업
- (소요예산) '24년 180백만원
- (참여기관수) ('19년) 48개소 → ('20년) 63개소 → ('21년) 71개소 → ('22년) 60개소 → ('23년) 79개소 → ('24년) 55개소 예정

자료: 보건복지부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19		'20		'21		'22		'23		합계
	1~3차	1일	1~3차	1일	1~3차	1일	1~3차	1일	1~3차	소그룹	
계	28	20	29	34	17	54	14	46	19	60	321
서울	7	3	2	5	2	9	2	10	5	17	62
부산	0	1	1	0	0	2	0	3	0	3	10
대구	3	0	2	1	1	7	0	3	1	5	23
인천	2	2	9	2	2	7	1	1	2	4	32
광주	0	0	1	2	2	2	1	1	0	2	11
대전	0	0	0	0	0	0	0	1	1	2	4
울산	1	0	0	1	0	0	0	2	0	2	6
세종	0	2	2	0	0	0	0	0	0	0	4
경기	7	3	5	14	3	13	3	10	5	7	70
강원	0	1	1	1	1	2	2	0	0	2	10
충북	1	0	1	1	0	1	0	3	1	3	11
충남	0	0	1	1	0	1	0	1	1	2	7
전북	3	1	2	2	1	1	0	2	0	1	13
전남	1	5	0	1	4	3	1	1	0	3	19
경북	1	1	0	1	0	0	2	4	1	0	10
경남	1	0	0	2	1	3	1	3	1	7	19
제주	1	1	2	0	0	3	1	1	1	0	10

주) 컨설팅은 1~3차 컨설팅(1차 시범평가→2차 중간점검→3차 최종 점검을 통해 컨설팅 제공)과 1일방문 컨설팅으로 구분됨(온종일 시범평가 및 컨설팅 제공)⁷⁾

'23년도부터는 심층컨설팅과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 실시⁸⁾

자료: 보건복지부

7) 1일방문 컨설팅은 1명의 컨설턴트가 온종일(오전 9시~오후 6시) 시범평가 시행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함.

8) < 2023년도 컨설팅 모형 >

심층 컨설팅 (1~3차)	주요 내용	1차	2차	3차
		- 시범평가 실시 - 개선목표 도출 - 컨설팅 진행계획 논의	- 개선과제에 대한 컨설팅 수행 및 중간점검 - 개선사항 추가/보완사항 도출	- 최종 평가 실시 - 최종점검 및 향후 관리방안 컨설팅 - 최종점검 및 향후 관리방안 컨설팅
	컨설턴트	2인 1조 (팀장, 팀원)	1인(팀장)	1인(팀장)
소그룹 컨설팅	주요 내용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		
		- 산후조리원 평가 취지 및 배경 -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 평가준비 방향성 설정		

- 2016년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 후 현재까지도 본평가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산후조리원 본평가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평가결과의 공표는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것이나,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영업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평가결과 공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민간 투자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원의 평가 의무화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평가에 따른 지원과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매년 전체 산후조리원의 3분의 1(약 160개소)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향후 5년간 31억 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산후조리원 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가 대상 산후조리원 수(A)	160	160	160	160	160	
평가비용 단가(B)	3.83	3.91	3.99	4.08	4.16	
추가재정소요 (A×B)	612	626	639	652	666	3,196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셋째,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 처리·정보 공유·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 현재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사업’의 정의 및 국가의 책무 규정⁹⁾, 「영유아보육법」상 ‘보육통합정보시스템’¹⁰⁾을 근거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사이트)이 구축·운영되고 있는바, 이 아이사랑 사이트에서도 임신·출산·육아 정보에 관한 정보와 임신육아 종합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개요 >

- (개요) 임신, 출산, 육아 상담 및 영유아 보육정보와 맞춤형 보육서비스 등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쳐 의료 및 정책 정보, 정서적 지지 등 도움이 필요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종합정보 제공 포털

9)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영유아보육법」은 원래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었으나, 2023년 12월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 역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됨.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구분	정보제공	상담 지원	서비스신청 (복지로)
임신	임신(33종), 고위험임신, 유산(3종), 난임(4종), 근로자 지원제도, 임신부 신고	○	온라인(4종) 방문(11종)
출산	출산(11종), 출산예정일, 근로자 지원제도, 출산지원 금(228종)	○	
육아	육아(49종), 함께하는육아(4종), 병원/약국찾기, 근 로자 지원제도, 장애아육아(12종)	○	온라인(6종) 방문(13종)
보육 (어린이집)	어린이집 찾기, 입소대기신청, 보육료결재, 시간제보육사업, 아이건강관리,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 어린이집 이용 신청 등	○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 정보제공: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시책 및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 어린이집 찾기: 주소별, 시설유형 및 특성별 검색, 정현원, 평가인증여부 등
 - 상담실 운영: 온·오프라인 연계 임신육아종합상담(의료·심리·사회적 상담, 온라인·전화·대면)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정확한 정보제공
 - 입소대기 신청: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 및 입소대기자 실시간으로 확인
 - 보육료 결제: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결제 서비스, 결제현황, 보육료연간지원내역 확인 등
 - 시간제보육신청: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라 임신육아종합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임신·출산 육아 외에도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등의 정보도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신육아종합포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나, 「모자보건법」상의 국가의 책무 조항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근거로 2016년 구축되어 이미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일상생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이트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구체적 실익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아울러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으로 서비스 제공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 아이사랑 사이트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결제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과 양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경우,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과 정보의 제공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 및 양육 정보를 「모자보건법」에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인구 30만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운영(송옥주의원안)

- 송옥주의원안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의17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② (생략)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영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서,¹¹⁾ 1990년대

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운영·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6년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한편,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 12월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하였음.

□ 2023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소¹²⁾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76개소 중 4.2%에 해당함.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평균 이용요금 (2주, 일반실)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76	20	456	57.7	58.9	177	335	7.5	12.2

자료: 보건복지부('23.12월 기준, 휴업제외)

□ 개정안은 인구 30만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등 출산인프라 확충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산후조리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2) p.33. 참고자료1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참조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인구 30만명 미만 기초자치단체 중 공공 산후조리원이 기설치된 16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148개 기초 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¹³⁾, 인구수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는 지역 내 기존의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수요·공급 현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재정부담¹⁴⁾을 수반하게 되므로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설치규모 및 기준 등에 대한 논의도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일부 지자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13) p.34. 참고자료2 개정안(송옥주의원안)에 따를 경우 설치가 예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참조

14)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 설치될 공공산후조리원의 수, 설치 규모 및 국가의 지원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등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기획재정부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통해 산후조리원 등 비용을 이미 지원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지원은 중복 소지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지원
충주시	1. 대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소도시의 경우 산후조리원 법정 의료 인력 기준 충족 어려움.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산후조리원 특성상 법정 필수 의료 인력 간호사 채용 유지가 어렵고, 병의원에 비해 간호인력 취업 비선호 업종임을 감안할 필요 2. 출산 의료기관과 공공 산후조리원간의 거리 근접 필요 - 지방 소도시의 경우 거주지역에 출산 산부인과가 없거나, 대도시의 병원 출산을 선호하는 경우 타지역 출산 후 병원 인근 산후조리원 이용하고 있음.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가 출산한 지역에서 주소지 공공산후조리원 원거리 이동 어려움 - 산모의 타 지역 이동 출산 고려하여, 광역 단위 공공산후조리원 검토 필요 3. 공공산후조리원과 의료기관 접근성 고려 - 산모, 신생아 응급 상황시 이송, 치료 문제 발생할 수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인근 병의원 없을 경우 이송 곤란 4. 민간 사업자 영업권 위협 - 산후조리원은 업종 특성상 개원시 시설투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관내에 이미 개원한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을 경우 민간사업자의 영업권 위협. 5.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및 운영비용 지방재정 총당 어려움 2025년 13실로 개원예정인 제천시 공공산후리원의 경우 신축 비용 69억 투입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에 군인·경찰공무원 등 명시 (김성원의원안)

- 김성원의원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이용 대상에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명시함(안 제15조의17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생략)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u>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u>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u> ----- ----- -----.

- 현행법¹⁵⁾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5)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부담 관련 사항 >

[별표 2의2]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

2. 운영기준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또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이용료 감면 범위 등을 규정¹⁶⁾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상 지원대상 외에도 지자체 거주 산모, 둘째아 이상 산모, 귀농·귀촌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산모에 대하여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및 우선 이용 대상에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이는 전방·격오지 근무 또는 비상대기 등 근무지 및 거주지 선택의 제약이 있는 군에 대한 특수성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직종에 대한

16) p.36, 참고자료3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인 지자체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참조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법적 목적과 함께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상의 지원대상은 국가 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다문화가족 산모·장애인 등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예우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군인복지기본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복지·보육·여가·생활편의 시설을 시중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직종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및 우선이용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 국민 또는 격오지 근무가 필요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중에서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대상 우선 이용 또는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입법례 또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련 규정 >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공산후조리원 직접 설치·운영 등
(이정현의원안)

□ 이정현의원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되, 신생아 수 대비 민간산후조리원 수가 특히 부족한 지역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지역 ----- ----- ----- ----- -----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1. 신생아 수 대비 민간산후조리원 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신설>	2.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신설>	3. 최근 5년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이 0.5명 미만인 지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5조의17제1항 단서에 따른 <u>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경비</u> ② (현행과 같음)
--	--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서,¹⁷⁾ 199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운영·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6년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한편,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 12월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하였음.
- 2023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소¹⁸⁾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76개소 중 4.2%에 해당함.

17)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8) p.33, 참고자료1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참조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평균 이용요금 (2주, 일반실)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76	20	456	57.7	58.9	177	335	7.5	12.2

자료: 보건복지부('23.12월 기준, 휴업제외)

-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특히 신생아 수 대비 민간산후조리원 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또는 최근 5년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공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입법 목적에 의미를 둘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구 40만명 미만 기초자치단체 중 공공산후조리원이 기설치된 1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168개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¹⁹⁾ 이는 국가의 재정에 상당한 규모의 부담을 초래하고 기존의 민간시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음.

19) p.38, 참고자료4 개정안(이정현의원안)에 따를 경우 설치가 예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참조

□ 한편, 시행령 별표 2의2²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감독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기획재정부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음.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	인구 40만명 미만 모든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는 실효성이 낮다고 보이며, 최근 5년간 평균 합계출산율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는 이용 인원이 적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경상남도	산후조리원은 분만산부인과 없이 단독으로 지역 설치 의무화할 경우 이용자 호응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음.

20)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신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 1】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

(단위: 명, m²)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임산부실	영유아실	면적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2014.2.	27	31	1,298
서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2023.12.	12	12	1,187
울산 북구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021.7.	28	28	2,883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2019.5.	13	13	1,498
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023.5.	20	20	2,437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016.2.	13	15	765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2.	10	10	1,341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6.	8	8	825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2.	5	5	603
충남 홍성군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2022.2.	8	9	580
전남 해남군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	2015.9.	10	10	494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2018.5.	10	10	616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2019.6.	10	10	730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20.12.	16	18	797
전남 순천시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2022.3.	5	5	113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9.	8	10	707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10.	12	14	1,432
경북 상주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12.	13	10	1,998
경남 밀양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2022.6.	8	8	524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2013.3.	11	15	548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 2】 **개정안(송옥주의원안)에 따른 경우 설치가 예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 148개 기초자치단체(164개 중 기설치 16개 제외)

(인구수: '24. 6. 기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23. 12. 기준)

연번	자치단체명	인구수	비고	연번	자치단체명	인구수	비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139,189		40	울산광역시 울주군	218,935	
2	서울특별시 중구	121,475		41	경기도 광명시	278,458	
3	서울특별시 용산구	206,061		42	경기도 동두천시	87,499	
4	서울특별시 성동구	276,597		43	경기도 과천시	84,921	
5	서울특별시 강북구	285,054		44	경기도 구리시	186,280	
6	서울특별시 금천구	226,672		45	경기도 오산시	236,847	
7	부산광역시 중구	38,174		46	경기도 군포시	258,991	
8	부산광역시 서구	102,983		47	경기도 의왕시	155,593	
9	부산광역시 동구	86,820		48	경기도 이천시	222,614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105,434		49	경기도 안성시	191,677	
11	부산광역시 동래구	269,105		50	경기도 양주시	280,188	
12	부산광역시 남구	255,816		51	경기도 포천시	142,365	기설치
13	부산광역시 북구	270,824		52	경기도 여주시	114,645	기설치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294,246		53	경기도 연천군	41,091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212,892		54	경기도 가평군	62,393	
16	부산광역시 강서구	142,292		55	경기도 양평군	126,273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212,093		56	강원도 춘천시	286,537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173,167		57	강원도 강릉시	208,434	
19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032		58	강원도 동해시	87,988	
20	부산광역시 기장군	177,119		59	강원도 태백시	38,161	
21	대구광역시 중구	92,659		60	강원도 속초시	81,409	
22	대구광역시 서구	163,359		61	강원도 삼척시	62,354	기설치
23	대구광역시 남구	136,893		62	강원도 홍천군	67,205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259,280		63	강원도 횡성군	46,327	
25	대구광역시 군위군	22,707		64	강원도 영월군	37,134	
26	인천광역시 중구	164,129		65	강원도 평창군	40,505	
27	인천광역시 동구	58,761		66	강원도 정선군	33,808	
28	인천광역시 계양구	281,308		67	강원도 철원군	40,888	기설치
29	인천광역시 강화군	68,772		68	강원도 화천군	22,955	기설치
30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74		69	강원도 양구군	20,890	기설치
31	광주광역시 동구	106,462		70	강원도 인제군	31,769	
32	광주광역시 서구	281,113		71	강원도 고성군	27,169	
33	광주광역시 남구	208,095		72	강원도 양양군	27,579	
34	대전광역시 동구	215,936		73	충청북도 충주시	207,468	
35	대전광역시 중구	223,304		74	충청북도 제천시	129,618	
36	대전광역시 대덕구	170,090		75	충청북도 보은군	30,735	
37	울산광역시 중구	207,693		76	충청북도 옥천군	48,586	
38	울산광역시 동구	151,521		77	충청북도 영동군	43,848	
39	울산광역시 북구	216,893	기설치	78	충청북도 증평군	37,316	
79	충청북도 진천군	86,751		135	경상북도 영천시	100,013	
80	충청북도 괴산군	36,165		136	경상북도 상주시	92,908	
81	충청북도 음성군	90,245		137	경상북도 문경시	67,929	
82	충청북도 단양군	27,566		138	경상북도 경산시	266,706	
83	충청남도 당진시	170,375		139	경상북도 의성군	49,375	
84	충청남도 공주시	102,045		140	경상북도 청송군	23,887	
85	충청남도 보령시	94,655		141	경상북도 영양군	15,490	
86	충청남도 서산시	175,657		142	경상북도 영덕군	33,518	
87	충청남도 논산시	109,413		143	경상북도 청도군	40,984	

88	충청남도 계룡시	46,687		144	경상북도 고령군	30,254	
89	충청남도 금산군	49,973		145	경상북도 성주군	41,818	
90	충청남도 부여군	60,156		146	경상북도 칠곡군	108,836	
91	충청남도 서천군	48,706		147	경상북도 예천군	54,954	
92	충청남도 청양군	29,866		148	경상북도 봉화군	29,249	
93	충청남도 홍성군	98,437	기설치	149	경상북도 울진군	46,280	기설치
94	충청남도 예산군	78,324		150	경상북도 울릉군	9,162	
95	충청남도 태안군	60,517		151	경상남도 통영시	119,349	
96	전라북도 군산시	258,664		152	경상남도 사천시	108,865	
97	전라북도 익산시	268,143		153	경상남도 밀양시	101,253	기설치
98	전라북도 정읍시	102,851		154	경상남도 거제시	232,973	
99	전라북도 남원시	76,082		155	경상남도 의령군	25,257	
100	전라북도 김제시	81,025		156	경상남도 함안군	59,408	
101	전라북도 완주군	98,878		157	경상남도 창녕군	56,487	
102	전라북도 진안군	24,413		158	경상남도 고성군	48,660	
103	전라북도 무주군	23,125		159	경상남도 남해군	40,303	
104	전라북도 장수군	20,789		160	경상남도 하동군	41,154	
105	전라북도 임실군	25,858		161	경상남도 산청군	33,514	
106	전라북도 순창군	26,785		162	경상남도 함양군	36,503	
107	전라북도 고창군	51,327		163	경상남도 거창군	59,867	
108	전라북도 부안군	48,591		164	경상남도 합천군	40,756	
109	전라남도 목포시	212,502					
110	전라남도 여수시	270,047					
111	전라남도 순천시	276,986	기설치				
112	전라남도 나주시	116,968	기설치				
113	전라남도 광양시	153,164					
114	전라남도 담양군	45,031					
115	전라남도 곡성군	26,715					
116	전라남도 구례군	24,134					
117	전라남도 고흥군	60,672					
118	전라남도 보성군	37,401					
119	전라남도 화순군	60,941					
120	전라남도 장흥군	34,633					
121	전라남도 강진군	32,478	기설치				
122	전라남도 해남군	63,877	기설치				
123	전라남도 영암군	51,875					
124	전라남도 무안군	90,544					
125	전라남도 함평군	30,348					
126	전라남도 영광군	51,376					
127	전라남도 장성군	42,233					
128	전라남도 완도군	46,103	기설치				
129	전라남도 진도군	28,717					
130	전라남도 신안군	38,222					
131	경상북도 경주시	245,669					
132	경상북도 김천시	136,202	기설치				
133	경상북도 안동시	153,816					
134	경상북도 영주시	99,735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 3】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인 지자체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자체명	지원대상	지원 범위
서울 송파구	시행령과 동일 + 구청장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 상 출산자: 이용료 3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이용료 20% 감면
서울 서대문구	시행령과 동일 +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서대문구 주민: 이용료 20% 감면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자: 이용료 90% 감면
울산 북구	시행령과 동일	취약계층 산모: 이용료 50% 감면
경기 여주시	시행령과 동일 + 공공산후조리원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취약계층 산모: 이용료 50% 감면
경기 포천시	시행령과 동일 + 공공산후조리원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취약계층 산모: 이용료 50% 감면
강원 삼척시	삼척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산모	1년내 삼척시 거주 산모 : 이용료 100% 감면
강원 철원군	시행령과 동일 + 철원군 주민등록자+군수가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철원군 거주 1년 미만자 : 이용료 50% 감면 철원군 거주 1년 이상자 : 이용료 70% 감면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 산모: 60~70% 감면
강원 화천군	시행령과 동일 + 화천군 거주 산모	모자보건법령 시행령상 취약계층 : 이용료 100% 감면 화천시 1년 미만 거주 산모 : 이용료 50% 감면 화천시 1년 이상 거주 산모 : 이용료 100% 감면
강원 양구군	시행령과 동일 + 양구군 거주 산모	양구군 1년 이상 주민등록 산모 : 이용료 100% 감면 양구군 1년 미만 주민등록 산모 : 이용료 70% 감면 모자보건법 시행령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지자체명	지원대상	지원 범위
충남 홍성군	시행령과 동일 + 홍성군 거주 산모 + 홍성의료원 분만하고 홍성군 이외 지역 산모	홍성의료원 분만, 홍성군 이외 산모 : 이용료 10% 감면 홍성군민 산모 : 이용료 30% 감면 모자보건법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50% 감면
전남 해남군	시행령과 동일 + 둘째아 이상 산모+귀농·귀촌인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전남 강진군	시행령과 동일 + 둘째아 이상 산모+귀농·귀촌인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전남 완도군	시행령과 동일 + 둘째아 이상 산모+귀농·귀촌인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전남 나주시	시행령과 동일 + 둘째아 이상 산모+귀농·귀촌인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전남 순천시	시행령과 동일 + 둘째아 이상 산모+귀농·귀촌인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경북 울진군	시행령과 동일 +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모자보건법 시행령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50% 감면 울진군민 산모 : 이용료 30% 감면 경북도민 산모 : 이용료 10% 감면
경북 김천시	시행령과 동일 +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경상북도 1년이상 거주 : 이용료 10% 감면 김천시 1년이상 거주 : 30% 감면 김천시민 중 취약계층 : 50% 감면
경북 상주시	시행령과 동일 +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상주시민 산모 : 이용료 30% 감면 경북도민 산모 : 이용료 10% 감면 모자보건법 시행령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50% 감면
경남 밀양시	시행령과 동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자 : 이용료 최대 70% 감면
제주 서귀포시	시행령과 동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최대 70% 감면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 4】 개정안(이정현의원안)에 따른 경우 설치가 예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 1개 광역자치단체

(인구수: '24. 6. 기준)

연번	자치단체명	인구수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387,940	

☐ 168개 기초자치단체(186개 중 기설치 18개 제외)

(인구수: '24. 6. 기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23. 12. 기준)

연번	자치단체명	인구수	비고	연번	자치단체명	인구수	비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139,189		31	부산광역시 기장군	177,119	
2	서울특별시 중구	121,475		32	대구광역시 중구	92,659	
3	서울특별시 용산구	206,061		33	대구광역시 동구	343,248	
4	서울특별시 성동구	276,597		34	대구광역시 서구	163,359	
5	서울특별시 광진구	334,159		35	대구광역시 남구	136,893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41,345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259,280	
7	서울특별시 중랑구	381,126		37	대구광역시 군위군	22,707	
8	서울특별시 강북구	285,054		38	인천광역시 중구	164,129	
9	서울특별시 도봉구	305,400		39	인천광역시 동구	58,761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05,369	기설치	40	인천광역시 연수구	395,060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363,029		41	인천광역시 계양구	281,308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390,169		42	인천광역시 강화군	68,772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226,672		43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74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75,040		44	광주광역시 동구	106,462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378,324		45	광주광역시 서구	281,113	
16	부산광역시 중구	38,174		46	광주광역시 남구	208,095	
17	부산광역시 서구	102,983		47	광주광역시 광산구	393,954	
18	부산광역시 동구	86,820		48	대전광역시 동구	215,936	
19	부산광역시 영도구	105,434		49	대전광역시 중구	223,304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61,970		50	대전광역시 유성구	369,288	
21	부산광역시 동래구	269,105		51	대전광역시 대덕구	170,090	
22	부산광역시 남구	255,816		52	울산광역시 중구	207,693	
23	부산광역시 북구	270,824		53	울산광역시 남구	305,262	
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76,782		54	울산광역시 동구	151,521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294,246		55	울산광역시 북구	216,893	기설치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212,892		56	울산광역시 울주군	218,935	
27	부산광역시 강서구	142,292		57	경기도 광명시	278,458	
28	부산광역시 연제구	212,093		58	경기도 동두천시	87,499	
29	부산광역시 수영구	173,167		59	경기도 과천시	84,921	
30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032		60	경기도 구리시	186,280	

연번	자치단체명	인구수	비고	연번	자치단체명	인구수	비고
61	경기도 오산시	236,847		117	전라북도 익산시	268,143	
62	경기도 군포시	258,991		118	전라북도 정읍시	102,851	
63	경기도 의왕시	155,593		119	전라북도 남원시	76,082	
64	경기도 하남시	330,003		120	전라북도 김제시	81,025	
65	경기도 이천시	222,614		121	전라북도 완주군	98,878	
66	경기도 안성시	191,677		122	전라북도 진안군	24,413	
67	경기도 광주시	393,286		123	전라북도 무주군	23,125	
68	경기도 양주시	280,188		124	전라북도 장수군	20,789	
69	경기도 포천시	142,365	기설치	125	전라북도 임실군	25,858	
70	경기도 여주시	114,645	기설치	126	전라북도 순창군	26,785	
71	경기도 연천군	41,091		127	전라북도 고창군	51,327	
72	경기도 가평군	62,393		128	전라북도 부안군	48,591	
73	경기도 양평군	126,273		129	전라남도 목포시	212,502	
74	강원도 춘천시	286,537		130	전라남도 여주시	270,047	
75	강원도 원주시	361,430		131	전라남도 순천시	276,986	기설치
76	강원도 강릉시	208,434		132	전라남도 나주시	116,968	기설치
77	강원도 동해시	87,988		133	전라남도 광양시	153,164	
78	강원도 태백시	38,161		134	전라남도 담양군	45,031	
79	강원도 속초시	81,409		135	전라남도 곡성군	26,715	
80	강원도 삼척시	62,354	기설치	136	전라남도 구례군	24,134	
81	강원도 홍천군	67,205		137	전라남도 고흥군	60,672	
82	강원도 횡성군	46,327		138	전라남도 보성군	37,401	
83	강원도 영월군	37,134		139	전라남도 화순군	60,941	
84	강원도 평창군	40,505		140	전라남도 장흥군	34,633	
85	강원도 정선군	33,808		141	전라남도 강진군	32,478	기설치
86	강원도 철원군	40,888	기설치	142	전라남도 해남군	63,877	기설치
87	강원도 화천군	22,955	기설치	143	전라남도 영암군	51,875	
88	강원도 양구군	20,890	기설치	144	전라남도 무안군	90,544	
89	강원도 인제군	31,769		145	전라남도 함평군	30,348	
90	강원도 고성군	27,169		146	전라남도 영광군	51,376	
91	강원도 양양군	27,579		147	전라남도 장성군	42,233	
92	충청북도 충주시	207,468		148	전라남도 완도군	46,103	기설치
93	충청북도 제천시	129,618		149	전라남도 진도군	28,717	
94	충청북도 보은군	30,735		150	전라남도 신안군	38,222	
95	충청북도 옥천군	48,586		151	경상북도 경주시	245,669	
96	충청북도 영동군	43,848		152	경상북도 김천시	136,202	기설치
97	충청북도 증평군	37,316		153	경상북도 안동시	153,816	
98	충청북도 진천군	86,751		154	경상북도 영주시	99,735	
99	충청북도 괴산군	36,165		155	경상북도 영천시	100,013	
100	충청북도 음성군	90,245		156	경상북도 상주시	92,908	기설치
101	충청북도 단양군	27,566		157	경상북도 문경시	67,929	
102	충청남도 당진시	170,375		158	경상북도 경산시	266,706	
103	충청남도 공주시	102,045		159	경상북도 의성군	49,375	
104	충청남도 보령시	94,655		160	경상북도 청송군	23,887	
105	충청남도 아산시	351,686		161	경상북도 영양군	15,490	
106	충청남도 서산시	175,657		162	경상북도 영덕군	33,518	
107	충청남도 논산시	109,413		163	경상북도 청도군	40,984	
108	충청남도 계룡시	46,687		164	경상북도 고령군	30,254	
109	충청남도 금산군	49,973		165	경상북도 성주군	41,818	
110	충청남도 부여군	60,156		166	경상북도 칠곡군	108,836	
111	충청남도 서천군	48,706		167	경상북도 예천군	54,954	
112	충청남도 청양군	29,866		168	경상북도 봉화군	29,249	
113	충청남도 홍성군	98,437	기설치	169	경상북도 울진군	46,280	기설치
114	충청남도 예산군	78,324		170	경상북도 울릉군	9,162	
115	충청남도 태안군	60,517		171	경상남도 진주시	339,744	
116	전라북도 군산시	258,664		172	경상남도 통영시	119,349	

연번	자치단체명	인구수	비고	연번	자치단체명	인구수	비고
173	경상남도 사천시	108,865		180	경상남도 고성군	48,660	
174	경상남도 밀양시	101,253	기설치	181	경상남도 남해군	40,303	
175	경상남도 거제시	232,973		182	경상남도 하동군	41,154	
176	경상남도 양산시	356,268		183	경상남도 산청군	33,514	
177	경상남도 의령군	25,257		184	경상남도 함양군	36,503	
178	경상남도 함안군	59,408		185	경상남도 거창군	59,867	
179	경상남도 창녕군	56,487		186	경상남도 합천군	40,756	

